

[2014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제법 제3문 예시해설]

반도국가 A와 대륙국가 B는 300해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고, 도서국가 C는 A국으로부터 300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A국과 B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100미터이며, A국 연안 쪽이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 A국과 C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500미터이며, C국 연안 쪽에 수심 3,000미터에 달하는 해구가 위치해 있다. A국은 B국 및 C국과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선을 획정하는 외교협상을 준비 중이다. A국이 양국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국제법상 경계획정 원칙과 방법들을 검토한 후, 해양영역 확보와 관련하여 A국이 B국과 C국 각각에 대하여 견지할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I. 문제의 소재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200해리 범위 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고, 대륙붕 또한 육지의 자연적 연장 여부 등 해저지형과 관계없이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인정된다. A국은 B국이나 C국과 300해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 중첩되므로 경계획정이 문제된다¹⁾.

II.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방법²⁾

1.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변화

- (1) 1958년 대륙붕협약은 서로 인접·대향하는 국가들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방법으로 (다른 합의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국간에는 중간선으로 하며, 인접국간에서는 등거리선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ICJ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 협약상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규정의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인하면서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임을 강조하면서 (해안선의 일반적 형태, 대륙붕의 물리적 또는 지질학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른 관련국들의 합의가 경계획정의 기본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³⁾.
- (2)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간선이나 등거리선 등의 기술적 원칙을 배제하고 "공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38조에 규정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제74조·제83조 1항).⁴⁾

1) 문제의 소재는 부분은 기술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기술한 이유는 해양법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는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2) 목차구성에서 '1. 거리 중심의 중간선·등거리선의 기술적 원칙 · 2. 형평의 원칙 · 3.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3단계 방식' 순으로 정리해도 무방하다.

3) (축약기술) 1958년 대륙붕협약은 인접·대향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방법으로 중간선과 등거리선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ICJ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임을 강조하면서 (해안선의 일반적 형태, 대륙붕의 물리적 또는 지질학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른 관련국들의 합의가 경계획정의 기본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

- (3) ICJ는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에서 거리 기준에 입각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이미 국제관습법화되었으므로, 이 점은 대륙붕 경계확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200해리 이내의 중첩지역에서의 경계확정에 있어서는 지질학적·지형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며, 거리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4)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역시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간 뱅골만 해양경계확정사건'에서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단일 경계확정에 있어서는 해저의 지질학이나 지형학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당사국 연안의 지리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⁵⁾.

2. 해양경계확정에 관한 3단계 방식

- (1) ICJ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양경계분쟁에서 해양법 협약상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결합한 3단계 접근방법을 표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또한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간 뱅골만 해양경계확정사건'에서 3단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 (2) 3단계 방식은 '잠정적인 등거리선의 설정 → 해안선 길이의 균형성, 해안선의 굴곡 형상, 섬의 소재 등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검토 및 잠정 경계선의 위치나 방향의 조정 → 결과의 형평성 평가' 순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⁶⁾.

3.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단일경계의 확정 필요성

- (1) 인접국과의 대륙붕의 경계는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단일한 경계로 확정함이 일반적 추세이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이고 두 해역사이의 형평한 해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연성은 없다.

-
- 4) (축약기술)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확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ICJ 제38조에 규정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제74조·제83조 1항).
- 5) ((3)·(4) 축약기술) ICJ는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이미 국제관습법화되었으므로 200해리 이내의 중첩지역에서의 대륙붕 경계확정에서 지질학적·지형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며, 거리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또한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간 뱅골만 해양경계확정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 6) (축약기술) ICJ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양경계분쟁에서 해양법 협약상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결합한 3단계 접근방법을 표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또한 마찬가지이다. 3단계 방식은 '잠정적인 등거리선의 설정 →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요인에 대한 검토 및 잠정 경계선의 조정 → 결과의 형평성 평가' 순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 (2)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간 뱅골만 해양경계 획정 사건’에서 상부수역은 일국의 200마일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그 해저지대는 타국의 200마일 밖의 대륙붕이 되는 지대를 의미하는 **회색지대(grey area)**를 **정면으로 인정**하였다⁷⁾.

Ⅲ. 구체적인 협상 전략

1. 대륙국 B국과의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입장과 논거

가. 기본원칙 : 거리 중심의 등거리선

A국과 B국의 마주보고 있는 해양거리는 300해리이므로 3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우선 거리기준의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협상을 시작한다. 반도국가 A국과 대륙국 B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100미터로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A국과 B국 사이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 해저의 지질학이나 지형학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분리하여 경계를 획정할 필요성 역시 없어 보인다⁸⁾.

나. 형평성 요소의 고려

- (1) 반도국가는 통상 대륙국가보다 해안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해안선의 굴곡 형상도 복잡하며 해안선에 섬도 산재한 경우가 많다. 만일 반도국가 B국에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잠정적인 중간선을 대륙국가 B국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을 주장한다⁹⁾.
- (2) 사안에서 ‘바다의 깊이가 A국 연안 쪽이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는 지형학적 요소는 해양경계획정에서 A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이 아니다. 따라서 대륙국 B국이 이를 근거로 잠정적 등거리선의 A국 방향이동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해양경계획정에서 ‘지질학적·지형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국제판례의 동향을 근거로 반박논리를 체계화해야 한다¹⁰⁾.

7) (축약기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이고 두 해역사이의 형평한 해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연성은 없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또한 회색지대(grey area)를 인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8) (축약기술) A국과 B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100미터로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국은 해양경계획정에서 해저의 지형학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3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협상을 시작한다. 지형학적 요소를 고려할 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분리하여 경계를 획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9) (축약기술) 반도국가 B국에 해안선의 굴곡 형상이 복잡하고 섬도 산재해 있다면 이러한 요소를 주장하여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잠정적인 중간선을 B국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을 주장한다.

10) (축약기술) ‘바다의 깊이가 A국 연안 쪽이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는 지형학적 요소는 A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이 아니다. 이에 대비해 해양경계획정에서 ‘지형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국제판례의 동향을 근거로 반박논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2. 도서국가 C국과의 협상에서 견지해야할 원칙과 논거

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협상의 분리

A국과 C국 사이의 해양거리는 300해리이지만 바다 깊이는 평균 500미터로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이 아니고, C국 연안 쪽에 수심 3,000미터에 달하는 해구가 위치해 있음을 고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원칙과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을 별도로 수립하고 별개의 협상으로 진행해야 한다¹¹⁾.

나.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질학적 요소의 적극적 주장

- (1) A국은 ICJ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판시한 대로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임을 강조하고 해저의 지질학이나 지형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C국 인근에 있는 수심 3,000미터에 달하는 수중해구는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중심으로 대륙붕 경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¹²⁾.
- (2) A국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륙붕경계의 획정과 관련한 국제재판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수용되기 힘든 측면이 있으나 해양법 협약상 해양경계분쟁이 선택적 배제사항임을 고려할 때 재판 외적인 협상전략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A국과 C국의 등거리선부터 C국의 연안 쪽에 치우쳐 있는 수중해구까지의 지역을 개발비용과 개발수익을 반분하는 내용의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¹³⁾.

다. 배타적 경제수역획정의 원칙 : 거리 중심의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역자체가 거리 중심으로 탄생한 제도이므로 ICJ의 3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중간선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형평에 따른 미세조정을 하면 된다¹⁴⁾.

-
- 11) (축약기술) A국과 C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500미터로 지질학적 대륙붕이 아니고, C국 연안 쪽에 수심 3,000미터에 달하는 해구가 위치해 있음을 고려하여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은 별도로 수립하고 별개의 협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 12) (축약기술) A국은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임을 강조하고 해저의 지형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C국 인근에 있는 수심 3,000미터의 수중해구를 중심으로 대륙붕 경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 13) (축약기술) A국의 주장은 국제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수용되기 힘든 측면이 있으나 해양법 협약상 해양경계분쟁이 선택적 배제사항임을 고려할 때 협상전략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더라도 A국과 C국의 등거리선부터 C국의 연안 쪽에 치우쳐 있는 수중해구까지의 지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 14) (축약기술) 배타적 경제수역은 3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중간선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형평에 따른 미세조정을 하면 된다.